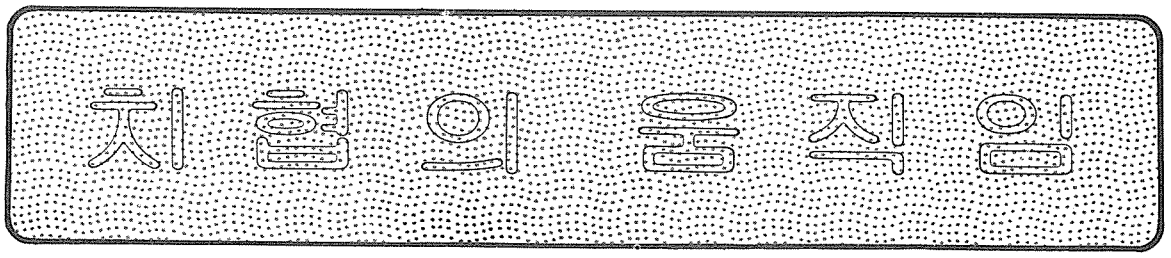

치과의사의 總意로 무면허의료업자 根絶다짐, 지도치과의사제도 규정강화를 재검토

치과돌팔이의 척결을 위해서는 전국치과의사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돌팔이를 검거한 서울시경 및 관할경찰서의 수사진들은 치과의사들의 능동적인 협조와 함께 돌팔이진료 제보만 있으면 근절하기란 용이하다고 강조하고 부정수진자들이 내원하면 주소와 전화를 확인하는 등 전국 치과의사들이 돌팔이 척결운동에 보다 적극 참여토록 촉구했다.

또한 각지부, 분회 임원진들은 매년 돌팔이진료가 성행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의 지도치과의사제도 강화 등 각종 근절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 명랑한 치과진료 질서와 클리닉 경영을 위한 최우선책으로 전국회원들이 일제히 척결운동에 능동적으로 참여, 되풀이 되는 현안문제를 탈피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치협은 지도치과의사제도강화로 부정기공물 제작의 단속은 물론 기재업자와의 협조로 치과의사,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재를 판매치 않는 방안등을 연구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특히 지도치과의사제도의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75년에 제정된「지도치과의사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할 방침도 연구 검토하고 있다.

전인교육을 통한 양질의 치과의사 배출을 위하여 84년 국가시험과목 시행에 철저 기하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개정된 의료시행규칙중 추가신설된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폭넓은 검토를 가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내년부터 치과의사국가시험에 구강진단학과 구강생물학이 추가됨에 따라 전국치과대학의 기초교육강화를 유도할 방침인 이번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기초과목 추가신설은 전인교육을 통한 양질의 치과의사 배출이란 협회의 당초목표에 따라 거의 반영된 것이다.

협회는 내년부터 기초과목의 추가 확대 실시에 대비, 기초과목 출제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빠른 시일내 기초교수 요원의 확보를 촉구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실시될 치과의사 국가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구강외과학(구강외과·마취·악안면성형외과), 보존학(근관치료·충전), 보철학(충의치·국소의치·계속가공의치·치과재료), 소아치과학, 치과방사선학, 치주과학, 구강진단학, 교정학, 임상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구강생리·구강생화학·치과약리·구강미생물), 보건의약관계법규.

제35회 국가시험 합격율 98.3%, 새 치과의사 350명 배출

올해 새로히 치과의사 3백50명이 탄생했다.

국립보건원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제35회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올해 3백61명이 응시원서를 제출, 시험당일 5명이 결시하여 3백56명이 시험을 치루었는데, 이 가운데 6명이 불합격 3백50명이 합격함으로서 98.3%의 합격율을 기록했다.

올해 치과의사 국시합격율은 지난해 98.18% 보다 0.23%가 높은 것으로서 경북치대 김동길군이 총점 3백

점 만점에 2백59.6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경희치대 김형균군(2백 55.3), 3위는 경희치대 김만군(2백 53.75), 4위는 경희치대 조영호군(2백 53.6), 5위는 경북치대 배영숙양(2백 53.5)이 각각 차지했다.

수석을 차지한 김동길(24세)군은 경북고 출신으로 경북 경산이 고향이다.

교수, 교과과정등 질적향상을 위해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양성기관 실태조사 실시키로

치협은 올해내에 치기학과와 치위생학과가 설치된 전문대학과 수련기관의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달 26일 의료기사 교육심의위원회로 갖고, 이같이 치과의료기사 양성기관의 학생 및 교과과정 현황, 교수요원실태, 교육시설 및 설비등 폭넓은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는데 이러한 실태조사는 치과의료기사의 자질향상을 꾀하고 장기수급전망을 추계분석, 적정수급안을 수립하여 정부당국에 정책자료로 제시키 위한 것이다.

치협은 특히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교과과정과 실정에 알맞는 교육자료를 개발할 방침이다.

그런데 현재 전국에 치기공학과는 8개, 치위생학과는 9개 교육기관이 있다.

각 위 원 회 소 식

◇ 보수교육위원회

일 시: '83년 1월 6일(목) 12:00
장 소: 다 원
참석자: 정동균, 박순원, 정성창.

1. 개회선언: 정 동 균 위원장
2. 안건토의

가. 연수교육 계획서 작성과정 건: 소위원회-보수교육 특별위원회-시·도 학술이사 연석회의-이사회에 부의키로 결정.

나. 보수교육특별위원회 개최일정 확정:
일시: '83년 1월 18일(화) 08:00
장소: 코리아나호텔 퀸룸(22층)

다. 치과의사 연수교육지침서 검토:

1) 평점: 치과의사협회가 주도적 역활을 하여 신뢰받는 치과의사상을 확립하고 국민구강보건 계몽시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년 15평점으로 확정(강의 1시간-1평점).

라. 교육기관검토: 치협산하 각 학회 평점을 5점에서 7점으로 변경.

마. 강 사:

1) 대학의 전임교수로서 2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자.

2) 2년 이상의 전공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전임 강사 치과의사.

3) 기타 보수교육위원회가 인정 하는자.

바. 벌 칙:

1) 연수교육기관으로서 지침에 불성실한 기관은 보수교육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외시킨다.

2) 1년 15평점 미 이수자는 치협에서 정한 벌칙을 적용할 수 있다.

3. 기타사항:

보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연수교육실태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조속히 콤프터를 협회내에 설치하도록 건의.

폐회: 14:20분

◇ 보수교육위원회

일 시: '83년 1월 18일(화) 08:00
장 소: 코리아나호텔 퀸룸
참석자: 정동균, 임창윤, 박순원, 정성창, 이선형, 김지수, 남일우, 이기수, 손성희, 윤수한.

1. 개회선언: 임창윤 부위원장
2. 토의안건:

가. 치과의사 보수교육 지침서 검토: 교육평점을 1시간, 년15평점을 취득해야 함을 재확인, 다음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 지침서 원안수리.

1) 교육면제대상: "해외근무자 년 6월이내 체류자"를 년 6월이상 체류자로 자구 수정.

2) 계획서 수립: 나항: 계획서 수립: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보수교육 개최일시 및 교육예정인원
나) 강사의 소속 및 교과과목별 이수시간
다) 보수교육 소요예산 및 피교육자의 경비 부담

액.

라) 기타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협회장이 요구하는 사항.

3) 보 고 : 가항 : 가급 보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실적보고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일시, 장소, 제목, 연자성명,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면허 번호순에 의거 교육이수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다.)

나) 보수교육 면제자 명단.

다) 매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 협회에 결과보고.

4) 강사자격 : 3함 : 현직외래 교수로서…"수련기관에서 추천한 자"를 "보수교육기관에서 추천한자"로 자구수정.

5) 평점 :

가) 치과대학 주관 보수교육 평점을 10점으로 하되, "전임교수 20명 이상"으로 자구 삽입.

나) "마목"기타를 다음과 같이 자구를 삽입한다. "1과목당 3평점을 초과할 수 없고, "동일과목의 중복 이수는 인정받지 못하며, 1일 5평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보수교육 계획서, 실적보고서 양식 및 교육필증, 참석자 카드를 제 지침서에 첨부시켜 지부로 하여금 업무능율을 기할 수 있도록 첨언.

7)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수합된 연제를 첨부하여 구체적인 '83년도 계획서를 받아 보수교육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후 시·도학술이사 연석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키로 결정.

폐 회 : 10 : 30

◇ 치과의료기사 교육심의위원회

일 시 : 1983년 1월 25일(화) 18 : 00

장 소 : 함춘회관

참석자 : 정동균, 민병순, 김종열, 오세윤, 백대일, 이광희, 박상진.

1. 개회선언 : 정동균 위원장

2. 회의록 검토 : 미리 송부한 유인물로된 회의록을 검토 후 주요사항만 수정키로 한바 4행중 "국립보건원에 진상을 파악키로"를 "국립보건원에 현황을 파악키로"로 자구수정하고 원안수리.

3. 토의안건 :

가. 지난 회의시 자료수집을 위임된 치과기공사 시험과목 및 교과과정에 관하여 오세윤 위원의 설명(자료별첨)후 치과의료기사 국가고시 합격을 저조 원인과 대책을 논의한바, 합격율을 높이거나 또는 교육기관 축소를 위한 통폐합을 거론하고 현 문·교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을 보았다.

나. 또한 치과위생사 현황문제는 박상진 위원이 설명(자료별첨)후 현시점에서 위생사 배출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의 일치보고 서울에 소재한 교육기관은 종합병원과 병설하여 운영하므로서 실습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지방학교는 외형으로 시설만 갖추었을 뿐 실습은 거의 못하고 있어 질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실태파악이 시급한 실정으로 결론 지었음.

다. 실태조사 계획(안) 검토.

1) 금년도뿐 교육기관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교부 시설기준에 합당한지 또는 문교부 전문대학시설기준에 합당한지 또는 문교부 전문대학 시설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도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하고 원안수리.

2) 외국의 치과의료기사 교육기관 실태조사와 조사서 양식을 빠른 시일내 수합토록 위임하고,

폐 회 : 21 : 00

◇ 치과기자재 규격심의위원회

일 시 : 1983년 2월 2일(수) 18 : 00

장 소 : 이한무 치과의원

참석자 : 오안민, 김철위, 김관식, 조기호, 이한무.

1. 개회선언 : 오안민 위원장

2. 안건토의 :

가. 치과용 코발트-크롬 주조용 합금규격(안)심의

1) 1.2분류 : 제 1 형 "고융합금"을 "고온도용 융합금"으로, 제 2 형 "저융합금"을 "저온도용 융합금"으로 자구수정.

2) 2.3물리적 성질 "표 1"이 누락되어 "4.3 표시"후미에 231페이지 도표를 삽입키로 결정.

3) 3.3.2인장 및 "강도"에 관한 요구사항으로 오기 정정하고 원안수리.

나. 치과용 인레이 주조용 왁스규격(안) 심의

1) 2.7표 1의 제2형 왁스 실험온도 30℃에서 1.0%이하, 유동성실험표 제 1 형 왁스 실험온도 37℃에서 1.0%이하, 제 1 형 왁스 실험온도 40℃에서 20%이하, 제 2 형 왁스 실험온도 40℃에서 50%이상, 제 1 형 왁스 실험온도 45℃에서 70%이상 90%이하, 제 2 형 왁스 실험온도 45℃에서 70%이상 90%이하로 한다.

2) 2.9사용 설명서를 국제규격 4.9제조자의 지시서 내용과 대체키로 결정.

3. 기타사항:

가. 보사부 고시 의료용구 지정의 건중 치과기계 기구류가 수입 및 생산에 지장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보완, 삭제사항이 있을수 있으므로 대한치과기재상공협회에 의견을 조회하기로 결정.

나. 차기위원회 개최일정 확정:

일시: 1983년 2월 10일(목) 18:00

장소: 이한무 치과위원

토의안건:

1) 제8편: 치과용 알지네이트 인상재 규격(안) 심의.

2) 제9편: 에크릴릭 레진치 규격(안) 심의.

폐 회: 21:00

◇ 치과기자재 규격심의위원회

일 시: 1983년 2월 10(목) 18:00

장 소: 이한무위원 치과

참석자: 오안민, 김철위, 이한무, 김관식.

1. **개회선언**: 오안민 위원장

2. **회의록 검토**:

가. 치과용 인레이 왁스 규격 2.7표 1의 제2형 왁스 실험온도 30℃에서 "10%이하"를 "1.0% 이하로 하고, 제2형 실험온도 40℃에서 "50%이하"를 "50%이상"으로 정정함.

나. 2.9사용설명서를 국제규격 4.9제조자의 지시서 내용을 삽입키로 결정하고 전문수리.

3. **토의안건**

가. 제8편: 치과용 알지네이트 인상재 규격(안) 심의

1) 2.4.3 경화시간 제2형 "120 내지"를 "120초 내지"로 자구삽입

2) 2.4.6 압축시의 변형량 문구 중(10내지 20% ADA)를 삭제

3) 2.4.7 영구변경 문구 중(30초간 10%의 변형량을 가함 ADA)를 삭제

4) 5.2의 "사용설명서"를 2.4.9 "사용설명서"에 대체

5) 4.2.1.5 다이알 게이지 "0.59±0.1"를 "0.59±0.1N"으로 자구삽입하고 전문수리.

*제8편 2.4.8 그림 1과 치과용 코발트-크롬 주조용 합금규격표 1의 도표를 각 위원에 송부함.

나. 제9편: 애크릴릭 레진치 규격(안) 심의
4.4.2 "실험과정" 자구삽입

다. 제10편: 치과 인상용 페이스트 산화아연 유지놀형 규격(안) 심의: 무수정 원안 전문수리.

라. 기타사항:

1) 차기회의 개최일정 확정:

가) 일시: 1983년 2월 23일 18:30

나) 장소: 석 란

다) 토의안건:

(1) 제11편: 치과용 수은규격(안) 심의

(2) 제12편: 치과용 베이스 플레이트(파라핀)왁스규격(안) 심의

(3) 제13편: 치과용 금합금 주조용매몰재 규격(안) 심의

폐 회: 21:00

◇ 치과기자재 규격심의위원회 규격심의 일정 계획표

1. 치과에 관한 기자재규격을 제정하기 위한 규격(안) 심의 작업일정을 확정코자 하오니 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협회 계획은 규격(안)을 본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정에 따라 내년 4월 총회전까지 제정코자 하며,

3. 제정된 규격은 보사부 고시 및 공업규격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편: 치과용 인산아연시멘트
제2편: 치과용 인산폴리카복실레이트시멘트
제3편: 치과용 아연유지놀형수복제
제4편: 치과용 아말감합금
제5편: 치과 주조용 금합금
제6편: 치과용 코발트-크롬주조용합금
제7편: 인레이 주조용 왁스
제8편: 치과용 알지네이트 인상재
제9편: 애크릴릭 레진치
제10편: 치과 인산용 페이스트: 산화아연-유지놀형
제11편: 치과용 수은
제12편: 치과용 베이스 플레이트(피라핀)왁스
제13편: 치과용 금합금 주조용 매몰재
제14편: 치과용석고, 경석고 및 초경석고
제15편: 의치상용 레진

◇ 보수교육위원회

일 시: 1983년 2월 16일(수) 18:00

장 소: 함춘회관

참석자: 정동균, 임창윤, 김현풍, 정성창, 이선형,

손동수, 박순원, 윤수한(위임), 김지수(위임).

1. 개회선언 : 정동균 위원장

2. 보수교육특별위원회 회의록 검토 :

치무과장이 유인물로된 회의록을 낭독후 다음 사항을 결정함.

가) 보수교육 참석자 카드는 협회가 총괄하고 정관으로 정해진 회비미납자 및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은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하고 전문수리.

3. 안건토의

가) 계획서검토 : 1983년도 기관별 보수교육 계획 획표에 의한 첨부된 분야별 연자의 지역분포도를 임창윤 부위원장의 설명을 듣고 선정된 연자들에게 계획표에 의한 강연승락서를 지부학술이사 연석회의전에 받기로 결정했음.

폐 회 : 20 : 30

◇ 대학교육심의위원회

일 시 : 1983년 1월 29일(토) 12 : 00

장 소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회의실

참석자 : 정동균, 윤중호, 조영필, 김남규, 조한국, 박재관, 고재승, 김오환, 양동규, 조규증, 서규원(무순)

1. 개회선언 : 정동균 위원장

2. 안건토의

가. 치과의사 국가시험 중 기초과목의 경과조치에 따른 대책

◇ 협회지 편집위원회

일 시 : 1983년 2월 15일(화) 18 : 30

장 소 : 스칸디나비안 클럽

참석자 : 정동균, 이상철, 김철위, 박태원, 김중수, 남동석.

1. 개회선언 : 정동균 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안건토의 :

가. 편집조정 : 협회지 종이질은 많은 개선이 있으나 국한문 혼용으로 활자호수가 통일성이 없어 독자에게 시간적으로 혼동우려가 있으므로 원저를 제외한 특집등을 최대한 한글로 표기하고 원고청탁도 한글로 의뢰키로 결정.

나. 광고게재 : 광고게재를 신중히 하기위해 광고와 리포트는 확실히 구분하여 게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토의한바 신제품 소개는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하되 이에 따른 관장은 김철위 위원이 하도록 결정함.

다. 특집방향 : 1) 소아치과 "이같이"에 대하여 특집을 하기로 하고, 손동수 위원이 계획을 편성하여 이상철 부위원장과 협의 조치하도록 결정함.

2) 학술분야 소식란을 활용, 이사회소식, 각 위원회 소식 및 회원동정을 사무국 협조을 얻어 게재하기로 결정.

라. 주간표기의 건 : 협회지 운영은 현재로서 직영할 수 없으므로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직영될 때까지 광고를 얻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승루(현대의학사 대표)에게 직책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협회지편집위원회 편집주간으로 위촉하도록 치협에 건의하기로 가결.

마. 광고가격 인상의 건 : 가능하면 광고단가를 인상하고 명함광고는 될 수 있으면 게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론이 없었음.

바. 특집조견표 검토 : 특집29(1982년 10월호, 제20권 제10호)"악골 골수질"을 "악골 골수염"으로자구수정하고 전문 수리.

폐 회 : 21 : 20

이사회 소식

□ 회장단 회의록

일 시 : 1983년 2월 3일(목) 08 : 00

장 소 : 협회 회의실

참석자 : 김동순, 신민철, 최재경, 진용환, 정동균, 박윤수, 이주봉, 주낙림.

1. 개회선언 : 박윤수 총무이사

2. 총무이사 출장복명

가. 지난 1월27일부터 29일까지 미납회비독려 및 각지부 현황파악, 의료보험조합 구성독려, 기공소 부정기공물제작단속, 단독개설개선 및 치과의료계 질서물란을 파악 확립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 부산, 경남지부를 순회출장하였던바 마침 경남 울산에서 부정치과의료행위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관련자를 입건 구속한 시기라 집행부 임원대담결과 각 기공소에 지도 치과의사를 2명씩 선정취임토록하고 6개월마다 복수추첨제로 지도치과의사를 교체하고

있으며,

나. 경남지부장, 총무, 심사이사와 마산분회장, 총무, 심사이사 6명이 지도 감독하기로 하고 각 기공소는 그에 따른다는 각서를 제출 받았음.

다. 또한 1982년 12월 17일 기공소 일제 지도감독에서 부정기공물 제작으로 1개 기공소가 적발되어 현재 휴업계를 제출한 상태에 있고 지도치과의사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계속 부정기공물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다고 복명.

3. 안건토의

가. 1983년도 의료부조리 척결방안 확정

1) 협회 1983년도 중점사업을 의료부조리 척결에 두고 있으므로 경남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예와 경위를 들어 전국지부 확산되도록 하되 서울은 빠른 시일내 착수키로 결정.

2) 또한 위와 관련하여 기사법 지시서등 법적보완 작업을 포함한 방안을 총무이사, 심사이사에게 위임하여검토케하고 수일후 방안을 재심의키로 가결.

나. 제9회 정기이사회 일정 확정

1) 일시 : 1983년 2월 9일(수) 오전8시

2) 장소 : 협회 회의실

다. 1983년도 예산안 심의

총무이사, 심사이사, 재무이사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위임하되, 각 이사 양해사항으로 하여 사전 담당부회장이 예산편성, 주요사업은 소위원회에 통보키로 결정함.

라. 직제규정 및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일부개정

1) 심사이사 개정요지 설명후 "서무과"를 "총무과"로 개정하고, 총무과에는 "서무계"와 "경리계" 및 정화담당을 두며, 학술과를 신설키로 결정.

2) 채용된 직원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되었으나 협회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일단 공모토록 규정하고 있어 융통성을 두어 특채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결정하고, 개정되기전까지 규정에 의거 채용하되 기획과장은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채용공고 후 발령키로 하고, 치무담당직원 채용도 같이 공고하는 것으로 결정.

마. 새마을 진료원 기자재 처리건

보사부 감사 결과 활용토록 지적되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 결의에 따라 처리하고 기증자에게는 동의사항을 알아 보도록 당부.

바. 입회금 동 적립금 활용의 건

10억기금은 회관이전 건립기금으로 입회금은 운영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가결.

4. 기타사항

가. 치과의사 국가고시 시험과목에 대한 개정상황 및 요지를 정동균 부회장 설명.

나. 전문의 제도 시행 심의위원회 위원추천을 다음과 같이 7명을 결정하고 치과대학 교직자 위원위촉은 정동균 학술위원장에게 위임.

위원명단 : 정동균 학술위원장, 박윤수 총무이사, 이웅순 치무이사, 이주봉 심사이사, 박광진(국립의료원), 박순원(서울지부 학술이사), 이재현, 양영태(수도육군병원).

다. 대학교육심의위원회 위원 보완의 건 :

위원회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의견을 보고 위원 보완을 원칙으로 결정함. 폐 회 : 10 : 00

□ 제9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일 시 : 1983년 2월 9일(수) 08 : 00

장 소 : 협회 회의실

참석자 : 김동순, 신민철, 최재경, 진용환, 정동균, 박윤수, 이웅순, 이주봉, 양정강, 주낙림, 이장훈, 이계성, 오안민, 조호현, 서정희.

1. 개회선언 : 박윤수 총무이사 2. 회장인사

3. 제8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검토

이번 이사회는 1983년도 예산안 등 토의안건이 많으므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미리 보내드린 유인물을 검토 하셨으리라 믿고, 수정사항만 받아드리기로 총무이사가 제청하고 수정사항 여부를 물은 바 이의가 없어 원안 전문 수리함.

4. 각 위원회 보고 :

유인물중 주요사항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고키로 하고 전문 수리.

5. 토의안건

가. 1983년도 의료부조리 척결 방안 : '83년도 협회 주요사업계획을 의료부조리 척결에 두고 부정의료행위와 기공소에서 제작되는 부정기공물 제작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수합된 자료는 지부에 보낼 예정으로 있다고 추진계획과 배경을 총무이사, 심사이사가 설명후 구체적 방안을 성안하기로 결정함.

나. 1983년도 예산안 검토 : 다음과 같이 단계별 검토 후 수리.

다. 정관개정안 심의 : 첨부된 개정안 중 다음 사항만 수정하고 원안수리.

1) 제8장 "대위원 및 대의원 총회"를 "대의원 총회"로 자구삭제.

2) 제13장 제66조 "본 협회의 회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일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여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이하 생략…을…전략…사무국을 "설치하고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로 자구수정.

3) 제68조(승인 및 임시이사 선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8조(승인 및 임시이사 선임) : 본협회 정관 제20조에 의거 선출된 주요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또한 주요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회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주무부장관의 선임에 의하여 전 제20조의 선거에 가름할 수 있다.

라. 새마을 기자재 처리의 건 : 대의원 총회의안으로 상정하여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

마. 적립금 회계 활용의건 : 입회금과 과년도 회비는 운영기금에 편입하고, 10억기금 및 기타 적립금은 회관이전기금으로 적립하는 안을 총회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재무이사에게 위임.

바. 직재규정 중 일부 개정안 심의 : 전문 원안수리.

사. 기공소 지도치과의사 규정 일부개정 : 동 규정 제3조 2항 "치과기공소에서 지도감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도치과의사(이하 지도치과의사라 함)는 해당기공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치과의사회(지부)의 회원만이 취임할 수 있다"를…전략…해당기공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치과의사회(분회) 의 회원만이 취임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

아. 보수교육지침서 일부개정 : 유인물을 검토하여 다음 이사회에서 심의키로 함.

자. 전문의 제도 심의위원회 위원 추가 선정의 건 : 회장단에 일임.

□ 예산심의 소위원회 회의록

일 시 : 1983년 2월 11일(금) 18 : 00

장 소 : 협회회관 회의실

참석자 : 김동순, 신민철, 최재경, 진용환, 정동균, 박윤수, 이주봉, 주낙림.

1. 개회선언 : 박윤수 총무이사

2. 안건토의 :

가) 1983년도 예산안 심의 :

나) 치과전문의 시험 시행연구위원회 위원위촉 :

대학측은 각 과목별로 1명씩 위촉키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위촉 했음.

김종원(구강외과), 이호용(보철과), 양원식(교정과), 이만섭(치주과), 한세현(소아치과), 이정식 보존과), 유동수(엑스선과), 이승우(진단과), 임창윤(구강병리과) 이상 9명.

□ 임시이사회 회의록

일 시 : 1983년 2월 17일(목) 18 : 30

장 소 : 협회회관 회의실

참석자 : 김동순, 신민철, 최재경, 진용환, 정동균, 박윤수, 이응순, 이주봉, 주낙림, 이장훈, 이계성, 오안민, 조호현, 서정희.

1. 개회선언 : 박윤수 총무이사

2. 안건토의 :

가)

1)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일부 개정 : 다음과 같이 선설 삽입하고 현행조항을 아래로 미루기로 가결.

"제17조 : 직원으로 채용된자는 채용후 10일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초본
2. 주민등록등본
3. 신원보증서
4. 재정보증서(사무국장 및 경리책임자에 한함)
5. 채용한 해외 급여소득이 있는 자는 원천징수 영수증.

"제7장""징계"를 "상벌"로 자구수정하고,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삽입한다.

제37조 :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이를 포상한다.

1. 업무수행에 있어서 사무 또는 기술면에 창의적 연구를 하여 현저한 효과를 올린자.
2.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며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효과를 올린자.
3.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협회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감소하게 한자.
4. 기타 전 각호에 규정한 것에 대등한 공로 또는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자.

2) 경리사무 취급규정 일부 개정 : 제7장 제56조…전략…"금전은 회장 또는 재무이사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를 금전은… 예입하여야 하며, 재무이사가 출납관이 된다"는 등 개정안

을 법적근거를 알아본 후 심의키로 결정했음.

3) 기공소 지도치과의사규정 일부개정 :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 4 조를 아래로 미루고 가결.

별표 1 양식은 부산, 경남, 전남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공지시서를 입수, 참고하여 제작토록 총무이사, 심사이사에 위임함.

제 4 조 :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에 기공물제작을 의뢰할 시는 별표 1 양식에 의거 치과기공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도치과의사는 이를 확인하고 지도 하여야 한다.

4) 기공소 지도치과의사 일부개정 : 경북지부에서 인준 신청한 기공소 지도치과의사 특별위원회 규정(안)을 심사이사가 심의 조치토록 위임함.

나). 부정기공물 제작시 처벌 법적 한계의 건 : 경남 마산 지부로부터 기공소에서 부정기공물 제작시 지도치과의사를 포함한 소장의 형사조치와 행정조치의 법적 한계를 질의해 왔음을 보고하고 토의한 바, 행정적으로 관련 지역 보건소에 고발 시키도록 회신하고 형사적 조치는 보사부 유권해석을 받아 회신하기로 가결.

다) 치의신보통신원 위촉의 건 : 각지부 활동상황 등 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통신원을 위촉키로 결정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통신위원"으로 자구를 수정키로 가결.

라) 신규직원 채용의 건 :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제 5 조에 의거 직원채용공모를 치의신보 272호 (1983. 2. 10)에 게재,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엄영욱"을 채용키로 가결.

마) 코리아헤랄드 광고의 건 : 정부시책에 의거 게재되는 협회광고건에 대하여 토의한 바 타 단체 게재내용을 알아보고 천연색으로 100만원 내에서광고키로 확정.

1) 계획의 수립 : 개정(안)다. 강사자격 3 항을 삭제, 4항 "퇴직 조교수 이상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퇴임 조교수 이상으로서 3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퇴임 조교수 이상의 자"로 자구삭제.

2) 평점 : 년 상한 : 10점(각 시·도 치과의사회), 5점 : 치과대학, 각 분과학회 협회 종합학술대회, 기타 책정 가결.

3) 벌칙 : 의료법으로 정해진 벌칙조항을 파악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확정하기로 결정하고 원안수리.

바) 아태치과연맹 분과위원 경질의 건 :

1) 홍보통신위원 : "정상주 전공보이사"를 "이장훈 현공보이사"로

2) 치과교육 면허심사위원 : 전 "어수철 국제이사"를 "양정강 국제이사로" 경질하기로 결정.

3. 참고사항 :

가.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원자격이 박탈되었거나 자격정지를 받은 회원은 보수교육을 받았다 해도 인정하지 않는다.

나. 보수교육 평점에 반영되지 않는 연수교육은 지상공고는 무방하다.

다. 외국연수교육, 세미나등 각종 회의참석은 보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각지부에서 보사부 승인을 받지 않고, 보수교육평점에 포함한다면 교육을 시키고 있어 승인을 받아 실시토록 공문 발송토록 당부.

4. 기타사항 :

전문의 시행에 따른 제반 사항을 토의키 위하여 "치과전문의 시험시행 연구위원회" 구성키로 하고, 다음 위원을 위촉 가결함.

번호	성 명	근 무 처
1	정 동 균	치협학술위원장
2	박 윤 수	치협총무이사
3	이 웅 순	치협치무이사
4	이 주 봉	치협심사이사
5	박 광 진	국립의료원 치과
6	박 순 원	서울·학술이사
7	이 재 현	전 치협 부회장
8	양 영 태	수도육군병원
9	김 종 원	서울대 치대(구외)
10	이 호 용	연세대 치대(보철)
11	양 원 식	서울대 치대(교정)
12	최 상 묵	서울대 치대(치주)
13	이 긍 호	경희대 치대(소치)
14	이 정 식	서울대 치대(보존)
15	유 동 수	서울대 치대(엑스선)
16	이 승 우	서울대 치대(구진)
17	임 창 윤	서울대 치대(병리)